

지방재정제도발전연찬회 개최

전 용 환 /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

- 행정자치부는 2001년 3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경주 교육문화회관(경주시 신평동 소재)에서 시·도 예산담당관 및 경북도내 시·군 기획감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제도발전을 위한 『지방재정제도발전연찬회』를 개최하였다.
- 『지방재정제도발전연찬회』는 지방자치실시이후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재정의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제도의 운영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실무적 경험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도발전에 반영해 나가기 위하여 지난 '99년 3월 처음 개최한 이래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정립, 복식부기도입, 통합제정 수지 작성 등에 동기부여와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지방재정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 특히 제5회째 개최한 이번 연찬회는
 -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늘어날 수 있는 행사성·선심성 재정지출을 억제하고 소액분산 투자를 축소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과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욕적인 투자사업 추진으로 지방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지방재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채무관리 방안

등 지방재정 전반에 걸쳐 당면한 현안과제를 토론주제로 선정하여 시·도별로 주제발표를 하고 종합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 토론주제별 주요발표내용을 소개하면

- 제1주제인 『재정건전화계획 이행력 확보방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한 충청남도 이회경 예산투자담당관은 충남 서천군이 금년에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의 내용을 사례로 들면서
 - 재정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재정건전화의 한계가 있음을 역설(力說)하고 재정건전화계획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광역·중앙의 재정적 지원방안과 지방비부담을 과중하게 하고 있는 수도법 개정 등 『재정건전화계획 수립단체, 광역자치단체, 행정자치부를 포함한 중앙부처』에서 공동의 문제의식을 갖고 추진하여야만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제2주제인 『지방채무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부산광역시 정경진 예산담당관은
 - 지방채무가 '96년이래 연평균 9.85% 수준으로 증가추세에 있고 주민욕구 충족과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시적인 성과추구를 위한 개발욕구는 지방채발행의 증가요인으로 항상 잠재해 있으므로
 - 지방채의 상환능력,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 비용과 편익분석 등을 고려한 지방채 발행의 『적정기준정립』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민간부문 위축, 투자의 비효율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부산광역시의 사례를 들어 지방채발행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방채발행 관리기준

○ 지방채무증가율 기준

- | |
|---|
| $\bullet \text{ 채무증가율} = \frac{\text{당해연도 채무순증가액(발행액-상환액)}}{\text{전년도 채무액}} \leq \text{당해년도 예산증가율}$ $\bullet \text{ 다음년도 발행한도액(A)} = (\text{전년도 채무액} \times \text{채무증가율}) + \text{당해연도 상환원금}$ |
|---|

○ 예산대비 채무비율 기준

$$\begin{aligned} \cdot \text{기준채무비율} &= \frac{\text{기준년도 채무액}}{\text{기준년도 예산액}} \times 100 \\ \cdot \text{다음년도 발행한도액(B)} &= (\text{당해년도 예산액} \times \text{기준채무비율}) \\ &\quad - \text{전년도말 채무잔액} + \text{당해년도 상환원금} \end{aligned}$$

○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적정규모

$$\cdot \text{다음년도 지방채발행 적정규모} = \frac{A+B}{2}$$

<운 용>

- 기준 채무비율 산정시 기준년도는 2000. 1. 1현재 기준
- 채무증가율이 당해연도 예산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당해연도 예산증가율 적용
- 채무증가율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지방채 발행기준 금액의 평균을 다음연도 지방채 발행 적정규모로 함
- AG, 광안대로건설 등이 끝나는 2003년부터는 기준 채무비율에서 매년 3%P를 감안 요율을 적용
- 다만, AG준비 등 특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최소경비에 한하여 발행기준 적용의 예외 인정
- 매년 8월말까지 다음연도 지방채 발행규모 결정

○ 제3주제인 『재정운영상황 측정의 객관성 확보방안』에 대해 주제를 발표한 충청북도 이승규 예산담당관은

- 결산기준으로 작성되는 『재정분석·진단제도』의 시차축소를 통하여 재정환류 기능을 단축시켜 나가기 위해 지난해부터 당해연도의 선심·행사성 경비, 소액분 산투자, 예산절감 등을 파악하는 『재정운영상황 측정』은 지방자치시대에도 선심성·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투자비를 늘리어 책임재정을 도모하는 재정관리제도로서 적절하다고 말하면서
- 다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선심성·행사성경비 개념정립·분류, 지표의 측정방법 다양화, 예산절감 평가방법 개발 등을 통하여 객관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제4주제인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전라북도 이학진 예산담당관은
-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크게 불균형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사업별로 획일적인 기준보조율을 적용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 국고보조가 필요한 자치단체가 재정력이 빈약하기 때문에 보조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정력이 건실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고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 지방재정의 경직화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율 도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차등보조율(인상보조율)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차등보조율(인상보조율) 도입모델

- ☐ 도입방향 : 적용기준의 단순화 및 재정력 차이에 따라 적용할 구체적인 인상보조율 마련
- ☐ 적용기준 : 재정력 지수
- ☐ 인상보조율 적용기준(안)

재정력 지수	인상보조율	자치단체분포율
20% 미만	기준보조율에서 20%를 가산한다	54(21.8%)
20%이상~40%미만	기준보조율에서 15%를 가산한다	82(33.1%)
40%이상~60%이하	기준보조율에서 10%를 가산한다	55(22.2%)

※ '99회계연도 지방재정종합분석(행정자치부) 자료를 살펴보면 전 자치단체중 재정력 지수가 20%미만인 자치단체가 21.8%, 20%~40%가 33.1%, 40%~60%는 22.2%로 재정력 지수가 60% 이하인 자치단체는 77.1%에 이르고 있다. 인상보조율 적용대상 범위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겠으나 재정력 지수 차이에 따른 인상보조율 적용기준을 나름대로 구성하여 보았다.

○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행정자치부 이삼걸 재정경제과장은

- 지방자치의 본격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각종 기대수요가 증가하고 그동안 국가에서 추진해 오던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과중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지방재정의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을 강조하고
- 일부 자치단체의 소액분산투자, 전심성·행사성 예산낭비 사례 발생과 관련, 지방자치시대에 모든 것을 법으로 규제·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행정자치부가 구축하여 전 자치단체의 예산운영상황을 볼 수 있는 LBIS(Local Budget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에 예산배정, 지출과 결산결과와 내용을 추가하여 공개해 나감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비교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재정운영을 통제할 수 있는 재정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번 연찬활동에서 토의되고 건의된 내용을 재정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과 실무적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과 재정운영방침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관심사항을 연찬·토론과제로 선정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례적으로 연찬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

